

## 제23대 국교련 제3차 회장단회의 결과

- 일 시 : 2020년 7월 24일(금) 14시
- 장 소 : 군산대학교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
- 참석자 : 공동회장단교 /29개교, 전체교 /41개교

| 연번 | 학교              | 직위     | 참석자 |
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|
| 1  | 국교련             | 상임회장   | 오홍식 |
| 2  |                 | 사무총장   | 김경호 |
| 3  |                 | 전문위원   | 함주현 |
| 4  |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    | 회장     | 박철원 |
| 5  | 강원대학교 교수회       | 회장     | 이한수 |
| 6  | 경북대학교 교수회       | 의장     | 박 만 |
| 7  |                 | 부의장    | 김성룡 |
| 8  |                 | 부의장    | 조광수 |
| 9  | 경상대학교 교수회       | 회장     | 백승철 |
| 10 |                 | 부회장    | 윤석주 |
| 11 |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|
| 12 |                 | 사무국장   | 이정민 |
| 13 | 공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  | 회장     | 한명숙 |
| 14 |                 | 부회장    | 조혜영 |
| 15 |                 | 총무     | 손재천 |
| 16 | 공주대학교 교수회       | 회장     | 유석호 |
| 17 | 광주교육대           | 회장     | 방기혁 |
| 18 | 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     | 상임부의장  | 원명수 |
| 19 |                 | 사무국장   | 조혜영 |
| 20 | 금오공과대학교 교수회     | 회장     | 김상호 |
| 21 | 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     | 의장     | 이헌중 |
| 22 |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회     | 회장     | 황홍섭 |
| 23 |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평의회 | 의장     | 신윤희 |
| 24 |                 | 부의장    | 김재수 |
| 25 |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    | 회장     | 조철원 |
| 26 |                 | 대외협력이사 | 임정묵 |
| 27 | 순천대학교 교수회       | 의장     | 박홍균 |
| 28 |                 | 부의장    | 오시영 |

|    |             |       |      |
|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|
| 29 | 안동대학교 교수회   | 회장    | 안상준  |
| 30 | 전남대학교 교수회   | 의장    | 김도형  |
| 31 |             | 부회장   | 김근중  |
| 32 |             | 연구원   | 정재우  |
| 33 |             | 의장    | 이창헌  |
| 34 | 전북대학교 교수회   | 부회장   | 이인재  |
| 35 |             | 부회장   | 소은선  |
| 36 |             | 사무처장  | 임익태  |
| 37 |             | 정책처장  | 제갈윤석 |
| 38 | 제주대학교 교수회   | 사무처장  | 최수석  |
| 39 |             | 특별위원회 | 박병욱  |
| 40 | 진주교육대학교 교수회 | 회장    | 강홍재  |
| 41 | 창원대학교 교수회   | 의장    | 류병관  |
| 42 | 춘천교육대학교 교수회 | 의장    | 이승복  |
| 43 | 충남대학교 교수회   | 회장    | 김종성  |
| 44 | 충북대학교 교수회   | 회장    | 이성덕  |
| 45 | 한경대학교 교수회   | 회장    | 오호택  |
| 46 | 한국교원대학교 교수회 | 의장    | 박종률  |
| 47 |             | 사무총장  | 김현욱  |
| 48 | 한국교통대학교 교수회 | 회장    | 이철원  |
| 49 |             | 부회장   | 한철희  |
| 50 | 한국해양대학교 교수회 | 회장    | 김상구  |
| 51 |             | 부회장   | 이상일  |
| 52 | 한밭대학교 교수회   | 회장    | 임경빈  |
| 53 | 국교조 정책위원    | 정책위원  | 남중웅  |
| 54 |             | 정책위원  | 김대중  |
| 55 |             | 정책위원  | 권오현  |
| 56 |             | 정책위원  | 김재수  |

## I. 제23대 국교련 제3차 회장단회의 회의록 보고

- 성원보고 : 전체 41교 중에서 29개교가 출석하였음
- 상임회장 인사말
- 군산대학교 박병선 총장 축하
- 의장소개

## II. 보고 및 논의사항

### 보고사항 1. 국교조 경과보고

- 자료집 27p 참조.

- 2020년 5월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교원노조법 제2조가 개정이 되었으며 2020년 6월 9일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, 공포되어 즉시 시행되었음
- 2020년 6월 24일 금오공대에서 지회설립 총회를 개최하였고 7월 14일 경상대학 대학 정책 포럼에서 고용노동부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진행하였음
- 28p 참조, 지난 5월 20일 노동부가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였으며 5월 20일 법이 통과되는 동시에 노동부가 해당 법안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
- 전교조가 법에 노조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것을 합법화 시키는 과정의 일환으로 28p 2-1을 참고하면 대학 교원 노조 가입범위를 확대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이는 퇴직한 교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려짐
- 아직까지 변동사항이 없는 내용으로는 2-2 대학교원 노조 정치 활동 금지조항, 2-3 교섭대상 및 사용자 측 당사자 문제 등이 있음
- 따라서 현재 국교련에서는 고등교육 정책을 단체교섭대상으로 지정하려 지속적으로 거론 하고 있으며 이것이 대상이 된다면 예산을 다루는 중앙행정기관, 관계자 등이 교섭 대상자로 지목될 것임
- 경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업종별 위원회에서 국공립 대학 위원회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국립대학의 합리적인 교원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됨
- 거론된 사안들이 합리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과 법률개정 등 관련된 각종 활동들을 함께 이루어가야 할 것임
- 국교조가 교섭을 할 때 지회에 관한 사항에서 지회는 본교의 위임, 총장은 교육부장의 위임을 받아야만 대학 개별 사안을 교섭할 수 있음
- 국교련 소속대학의 국교련 지회 설립 및 회원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현재 4개교가 설립이 되어있으나 2학기때 기회설립의 의사를 타진한 학교가 여러 곳 있음
- 각 대학에서 지회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국교조와 관련된 노동자 설명회를 요청하면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할 것이며 설립과 관련된 법적 매뉴얼이 필요할 시 메일로 배포할 예정임
- 현재 국교조의 자문위원, 정책위원장인 견호연 경상대 위원장이 단체교섭을 준비하고 있으며 본조에서는 정부와 교섭, 지회에서는 대학본부와 교섭을 할 수 있음
- 교섭대상은 교육정책 근로조건 경제적 사회지위 향상 등의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며 사용자 측을 교육부와 총장 인사혁신처장 기재부장관 등으로 확장시키고자 함
- 따라서 국교련에서는 각 대학의 상황에 맞게 정부와 교섭을 진행하였으면 좋겠으며 각 대학의 상황에 대한 안을 국교련측으로 전달하면 취합하여 의제로 다루도록 하겠으나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각 대학에서 수렴하길 바램
- 아울러 국립대학 총장협의회에도 의견을 전달하여 총장이 금기해야 할 행동에 대한 사항도 취합하여 교섭에 활용하고자 함
- 현재 국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략적으로 교육부, 노동부와 대응을 하고 있음
- 지난 경상대에서 정책포럼 시 고용노동부에 필증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나 아직 각 대학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으므로 수렴 이후 고용노동부와 합의하여 각 대학이

해결하지 못하는 사안들을 취합하여 진행할 예정임

- 질문을 전체적인 수렴을 하기 이전에 총장 독임제와 같은 공통이 문제들은 즉각 건의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됨
- 가시적인 예를 보여줄 수 있는 총장 독임제 같은 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의제를 국교련 사무국으로 전달할 시 정책위원회에서 의견을 반영한 후 지회설립 매뉴얼을 상임회장에게 전달하겠음
- 모든 국교련 회원회는 교수회, 교수평의회, 대학평의회, 교수노조 등 업무 권한이 상이하여 교수노조가 단일화되지 않는 이상 복수노조가 허용될 것으로 여겨지며 대학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이러한 문제들이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통일된 목소리로 무언가를 제시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김
- 2019년 단위지부가 대학에 설립되지 않는 것으로 들었으며 임원, 회장들이 국교조에 가입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것으로 전달받음
- 그러나 2020년 5월에 전달받은 내용은 달랐으며 국교자라는 노동조합이 교수들 사이에서 이미 공론화 되었고 그 조직의 연원이 국교련에서 탄생하였으면 더 많은 지부가 탄생하도록 도와주는것이 옳다고 사료됨
- 또한 지부가 제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, 효율적 접근이 부족하므로 노조가 생겼을 때 실제로 교수님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, 어떻게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와 같은 것들의 홍보가 잘 이루어지게끔 해야함
- 의장들이 계속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똑같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위에 언급된 사안들도 이전 회장단 회의 때 합의가 되어 결정된 사항임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준수가 되어야 함
- 교무회의 혹은 학무회의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교수들의 의견이 번복되어 뒤집어질 경우도 있기에 국교련 차원에서 창원대학교와 같은 사례가 있으면 법을 논의하여 논점을 넣어서 총장에게 공문을 전달하겠음

### 논의사항 1. 현행 고등교육법에 대한 의견

- 임주영 연구소장의 국립대학법과 관련이 있음
- 현재 고등교육은 사회적인 대학교육의 의미, 헌법에 나오는 자주성, 중립성, 전문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
- 이러한 문제들은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 교육 연구자료로서 접근이 아닌 대학을 중점으로 재산권을 주장하여 대학 평의회 구성 문제, 개방형 이사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켰으며 정작 중시되어야 할 교수님들의 참여율이 부진하게 되었으며 고등교육법에 전가되었음
- 이런 부분들은 국공립대학의 평의회 제도, 총장 후보자 추천, 위원회 제도 등에 있어 교수의 학문적 역할, 교육자의 역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짐
- 자료집 44p 참조, 공권력,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학문의 주체는 교원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대학과 교육부의 관계가 상하 관계가 되어서는 안됨

- 자료집 45p 참조, 대학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고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
- 자료집 46p 참조, 대학의 공공성의 운영에 있어 대학의 의사결정권은 교수, 교원들이 과반수 이상 점유하여야 한다고 사료됨
- 자료집 48p 참조, 안민석 의원이 제안한 ‘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’은 개선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부, 대학 내 사무국장 등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고 교수 및 학생 중심의 대학의 자율적 운영이 확립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

## 논의사항 2. 강사법 시행 1주년 점검

- 자료집 49p 참조, 고등교육법 제 14조 2항에 ‘강사’를 추가하였으나 강사, 교수들의 관점에서 강사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
- 자료집 51p 참조, 강사는 학문, 연구, 교수와 관련된 측면에서 학문적 동반자로서 지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어디까지나 학문 후속세대의 관점 또는 학생과 교수를 이어주는 학문적 중간구조의 관점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임
- 다만 강사는 여러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다중 교원이면서 비상근직이며 대학강의 이외에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직종으로 대학과의 관련성과 책임성이 약한 만큼 이를 고려하여 대학 내 의사결정, 대학 행정, 교인비 수령 등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짐

## 논의사항 3. 대학총장 선거 관련 쟁점

- 보도자료에 기인하여 2016년 7월 26일에 따른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이 이루어짐
- 교육부 공문에 따라서 교원, 직원, 재학생을 ‘수’를 합산하여 교원이 80%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관하여 동의함
-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 선출방식에는 외부위원보다는 직원, 학생의 비중을 높이도록 하였음
- 대학공문에서는 대학구성원 참여제의 자율성의 취지보다는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의도한 것으로 사료됨.
- 자료집 58p 참조, 대학구성원의 추천위원회 참여 확대(안)에서 외부인사 비율을 늘릴 것으로 여겨짐
-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식 개선 방향 중 대학구성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추진위원회에서의 선정으로 단일화하려고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음
- 대학총장 선거제 안착을 위해서 학생의 경우도 교육수요자라는 입장을 감안하여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, 총장선거 반영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짐
- 2020년 7월 15일 3차 결선에서 직원이 12.5에서 14로 늘어났으며, 조교는 0, 학생은 0에서 2로 조정되었음
- 국교련에서는 전임교원이 중심으로 하되 대학강사의 보조적 입장,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하여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- 충북대학교 정책위원 김대중 : 대학평의위원회는 대학의 의사결정 시 구성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며 총장선거와는 별개의 사안이며, 총추위 참여비율과 대학평의원의 비율을 혼선해서 발표하여 이해하기 어려웠음
- 총장 직접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할 때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게 되어있으나 총장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 조치하여 검찰에서 법을 적용할 때는 김영란법을 적용하고 있기에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것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임
- 각 대학의 자료는 그대로 자료집에 그대로 넣었기에 자료수정은 현장에서 이루어진 후에 결과집에 수록할 예정임
- 정책위원 워크숍 계획, 국교련 정책위원회 워크숍을 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이러한 절차를 밟겠음
- 대학평의위원회 구성, 총추위 구성의 비율에 차이가 있음
- 따라서 학교의 여러 가지 구성원들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선정하여 총장선거 기간에 시간강사, 무기계약직분들이 선거위 비율을 늘려달라고 얘기 할 것임
- 총장선거를 하기 전 국교련 차원에서 혹은 각 대학차원에서 기존 선거위 비율에 관하여 세대차이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음
- 평의위원회는 대학 운영에 자문·심의가 들어오기에 총장선거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총장 선거는 교수가 하되, 학생과 직원, 시간강사의 비 의사권 행사 등 원칙을 세워서 누구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국교련측에서 원칙을 만들어주길 바라며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에 전체의견을 수렴할 것을 권유함
- 교수들에게 확인된 다수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절차를 밟아 개선할 필요가 있음
- 대학평의원, 총추위 등 민주적으로 접근하면 바람직할 것을 여겨지나 직원들 사이에서 도지지 성향이 달라 갈등, 반목, 진영 분리가 형성되고 있음
- 총장선거(직선제)를 치루고 나서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아졌으며 총장선거 시 직원들이 가지게 될 힘이 두려움(왜 직원들이 왜 그만큼의 비율이 들어가야하는가?, 그 정당성은 바람직한 모습인가?, 대학문화 풍토조성에 기여 가능한가? 등)외부기관과의 협의도 필요
- 총장선거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해야하며 선출 관련하여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매뉴얼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예를들어 본인들 의사에 반하면 개편 자체를 무산시키고 해산하는 경우가 있음
- 정책위원회에서 규정을 만들거나 규정 내 합의를 거쳐야 함이라는 매뉴얼을 만들어 합의라는 단어의 모호성이 문제제기를 반복시킬 수 있어 협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됨
- 또한 총추위를 사퇴하였을 때 사퇴한 총추위원들을 다시 뽑을 수 있는 방법, 교직원들이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 등을 사전에 모색하여 방안 등을 대비하여야 이후 총장 선출 시 규정 등에 엮메이지 않을 것이며 국교련에서는 협상과정에 필요한

전략방법 등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으로 여겨짐

- 정책위원회 토론회 자료가 일정 부분 구축되었을 때 국교련 차원에서 토론회를 가질 예정

#### 논의사항 4. 지방 국공립 무상교육 실현화 방안

- 자료집 106p 참고
-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며 국교련의 전·현직 회장단들이 참여 중에 있음
- 2019년부터 국교련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현재 민주당 측에서 해당 안을 담당하고 있음
- 토론회의 주된 목적은 지역균등 발전, 공공성 확보 등 임
- 토론회를 통해 지방 국공립대학만이 아니라 전체 국공립대학을 선정, 국가지원 확대 등의 운용 등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음
- 자료집은 공주대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완성 후 토론회 자료집까지 구축되면 각 대학의 교수회로 전달하도록 하겠음
- 현재 국공립 대학들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국교련 차원에서 적극 지지하여 공동 성명서 또는 국교련의 공동의견을 만들어 지원하도록 할 것이며, 토론회 때 자료를 전달하여 국교련측에도 전달하도록 하겠음

#### 논의사항 10. 기타논의

- 105p 참조, 부산대학교 고현철 교수님 5주기 추모행사가 17일 예정이었으나 임시공휴일 지정 예정에 따라서 13일로 앞당겨서 진행할 예정임.
- 108p 참조, 무상교육과 관련하여 안내 되어 있으며 참고하여 가능한 참석을 요청 바람
- 질의 : 일부 지역은 각 지역 대학들끼리 간담회와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며, 8월 공식회의는 개최하지 않으나 호남, 제주권에서는 8월 중 제주·호남 회의를 진행할 예정

#### <회의사진>

